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공 보
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26-52호
2026. 11. 12.(목)

차 례

공 고(1)

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공고 제2026-1133호) …… 1

공람									

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/ 편집 미디어홍보과(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(오정동) ☎ 608-6607)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-1133호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2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자치법규명: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교류 및 재난안전, 격무·기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기업 전담, 인사교류, 재난 및 안전관리, 민원 분야, 숙련기술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확대·신설함(안

제25조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).

나.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의 2년 근무 요건을 삭제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함(안 제25조의3, 별표 15의4).

다.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규정함(안 제25조의6).

라.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인사교류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25조의7).

4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(참조: 운영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(우)34443 /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(오정동)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운영지원과

(전화: 042-608-6523, FAX: 042-608-3821, E-mail: phj890105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
5. 그 밖의 사항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담당자(전화: 042-608-6523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또는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역 현안 대응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을 포함한다.

제25조제4호 중 “격무·기피”를 “재난 및 안전관리,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”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.

제2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5.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

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

지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, 부여기준 및 한도 등은 별표 15의4와 같다.

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의 범위,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.

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6(근속승진기간의 단축)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.

제25조의7(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)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.

별표 1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(대통령령 제36251호)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) 별표 15의4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근무경력과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 근무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은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(행정안전부령 제617호)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5의4]

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및 한도(제25조의3 관련)

가점항목	부여요건	가산점	한도
교류직위 근무경력	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	교류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.02점	0.48점
전문관 근무경력	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	해당 전문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.05점	-
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근무경력	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	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우 - 1년 이하의 근무경력: 1개월마다 0.02점 - 1년을 초과하는 근무경력: 1개월마다 0.03점	0.75점
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 근무경력	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는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	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우 - 1년 이하의 근무경력: 1개월마다 0.02점 - 1년을 초과하는 근무경력: 1개월마다 0.03점	0.75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특별승진 임용기준)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「연구 및 지도직 규정」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5조(특별승진 임용기준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<후단 신설>	2. ----------.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또는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역 현안 대응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을 포함한다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격무·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	4. 재난 및 안전관리,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---------

공무원 <후단 신설>	------.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.
<신 설>	5.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
5.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	6. ----------제5호----------
제25조의3(근무경력 가산점) ①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.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총 가산점은 0.48점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5조의3(근무경력 가산점)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, 부여기준 및 한도 등은 별표 15의4와 같다.
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 전문관으	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

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,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.05점을 부여한다.	관리 업무와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의 범위,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.
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.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, 총 가산점은 0.75점을 초과할 수 없다.	<삭 제>
④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,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25조의6(근속승진기간의 단축)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서 “규칙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.
<신 설>	제25조의7(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)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

	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7조의4(민간기업 전담공무원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호에서 정하는 민간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(이하 “민간기업 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한 경우

② ~ ③ 생략

제27조의5(인사교류)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,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 ~ 3. (생략)

4.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

② ~ ⑤ 생략

제32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,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5호

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.

1 ~ 4. (생략)

5.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

5의2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

6. (생략)

제33조(승진소요 최저연수) ① ~ ② 생략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.

1.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: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

2.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: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

④ ~ ⑭ 생략

제33조의2(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) ① ~ ③ 생략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고,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

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.

1 ~ 2. (생략)

3.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: 2년

4. 생략

제38조의4(특별승진임용) ① ~ ③ 생략

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한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,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⑤ ~ ⑥ 생략

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

제24조(근무경력 가산점) ① ~ ③ 생략

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.

1.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

2.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

3.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·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

⑤ 삭제

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,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.

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.

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　　명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주　　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의　　견 :

내　　용	의　　견	비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